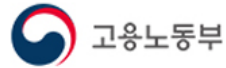


①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www.work.go.kr/youthjob



②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고객센터](#)

사업소개

운영기관

알림마당

마이페이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년 시행)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24개월간 지원
(최대 1200만원)

[더 알아보기](#)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시행)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24개월간 지원(최대 1200만원)

[더 알아보기](#)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시행)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개월간 지원(최대 960만원)

[더 알아보기](#)



③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공지사항



워크넷 시스템 중단 안내 2023-12-05

첨부파일 서버 증설로 인한 첨부파일서버 중단 안내 2023-12-04

고용24시스템 개시에 따른 워크넷 서비스(기업... 2023-11-22

서식자료실



[서식] 2023년 도약장려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 2023-07-25

[서식]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2021-02-01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2021-02-01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기업정보

기업 정보 수정

기업명	[Redacted]
지사명	
대표자	
소재지	

- 참여신청관리
- 채용자명단관리
- 지원금관리
- 만족도조사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에 대한 처리상태 및 협약체결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 현황

[Redacted]

- 2023년도사업참여 신청
- 2024년도사업참여 신청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사업참여 신청

2024.1.1. ~ 2024.12.31.
기간 내 채용자만 지원 가능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

▶ 참여신청서

- *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장시간 내용을 작성하시는 경우 저장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메모장 등에 먼저 작성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운영기관 선택

담당 운영기관*

운영기관찾기

① 운영기관 찾기

운영기관 찾기

② 강원지역 선택 및 “희망리본” 검색

주소(시/도)

강원

운영기관명

희망리본

검색

검색건수 3 건

운영기관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원주시사)	강원 태백시, 강원 삼척시	033-813-0013	61명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경기 가평군, 강원 춘천시, 강원 홍천군,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033-256-8828	242명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원주센터	강원 원주시, 강원 횡성군	033-813-0013	230명

닫기

③ 관할 지역 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선택

가평,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 대표 사업장 현황

사업연도	2024 *사업연도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사업장명	[Redacted]		
대표자명	[Redacted]		
사업자등록번호 (지사번호)	기업유형*	<input type="radio"/> 개인 <input type="radio"/> 법인	
업종	법인등록번호	[Redacted]	[Redacted]
소재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Redacted]	관리번호찾기
피보험자 합계*	[Redacted] 명	설립일	[Redacted]

① 기업유형 선택 (개인/법인)

② 관리번호 찾기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찾기

사업자등록번호	2218216390	법인등록번호	[Redacted]
---------	------------	--------	------------

*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는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유효한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가 조회됩니다.
 - 법인의 경우 대표 사업장은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시 작성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거나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의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사업장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소멸일자가 1년이상 경과된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가 7로 끝나는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시면 해당 번호가 참여신청서에 등록됩니다.
 * 조회결과가 0건인 경우 대규모여부, 소멸여부, 관리번호 끝자리 숫자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명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업종	소재지
[Redacted]	[Redacted]	12345678900	[Redacted]	[Redacted]

③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선택

대표자명		기업유형*	<input checked="" type="radio"/> 개인 <input type="radio"/>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지사번호)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text"/>
소재지			
피보험자 합계*	<input type="text"/> 명	설립일	<input type="text"/>

**1.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종코드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사업 지침 참고)**

**2. 기업 소재지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운영기관의 관할 지역이 맞는지 확인**

- 참여 신청서 하단에 있는 참여자격 제한 사유(지원제한의 기업, 지원제한의 청년)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업장
 - 대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장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업장에 추가된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기존 피보험자 수 계산 시 사용됩니다.
 - 해당하는 기업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수
 -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기준 참여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합계가 조회됩니다.
 - 단,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합계가 조회됩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은 참여신청서에 작성된 사업장의 성립일 중 가장 과거의 성립일 기준

- 기준 피보험자 수 : 대표 및 관련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 후 평균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에 수도권 기업의 경우 50%,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 올림(최대 30명)

▶ 관련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업종
피보험자 합계 <input type="text"/> 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관리번호찾기"/>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소재지	<input type="button" value="항목삭제"/>
	<input type="button" value="+ 항목추가"/>

**관련사업장(지점 등)이 있을 시
항목추가하여 기재**

▶ 기준 피보험자수,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장 합산)	<input type="text"/> 명 ※ 대표 및 관련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 후 평균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지원한도*	<input type="text"/> 명 ※ 기준 피보험자 수(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로 조회,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수도권 기업여부*	<input type="radio"/> 수도권 <input type="radio"/> 비수도권
사업개시일*	<input type="text"/>	매출액*	<input type="text"/> 원
매출액 시작일*	<input type="text"/>	매출액 종료일*	<input type="text"/>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8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 매출액은 2021년, 2022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사업개시일이 22.4.1.이어서 증빙하는 과세 대상기간이 22.4.1.~22.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 연 매출액 산정
- 기업은 2021년, 2022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① 수도권기업여부 체크

(수도권) 가평
(비수도권)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② 매출액 입력

- *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심사 제외
- * 2022년, 2023년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X1,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함

- 사업개시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재
- 시작일 및 종료일 : 2022년(2022.1.1~2022.12.31) 혹은 2023년(2023.1.1~2023.12.31)
- 매출액 : 선택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합계금액 기재

▶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기업 구분* (해당되는 분야에 모두 체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탈자 수 평균을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5명 이상일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식서비스산업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산업 <input type="checkbox"/> 문화콘텐츠산업 <input type="checkbox"/> 청년창업기업 <input type="checkbox"/> 미래유망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주력산업 <input type="checkbox"/> 고용위기지역 기업 <input type="checkbox"/> 특별고용지원업종
-------------------------------	--

-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채용계획

채용예정인원*	<input type="text" value="1"/> 명	근로계약형태*	<input type="text" value="정규직"/>
근무시간*	주 <input type="text" value="40"/> 시간 ※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만 가능	월급여*	<input type="text" value="2400000"/> 원 2,400,000 원
			<input type="button" value="항목삭제"/>
채용예정인원*	<input type="text" value="1"/> 명	근로계약형태*	<input type="text" value="기간제계약"/>
근무시간*	주 <input type="text" value="40"/> 시간 ※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만 가능	월급여*	<input type="text" value="2400000"/> 원 2,400,000 원
			<input type="button" value="항목삭제"/>
<input type="button" value="+ 항목추가"/>			

① 기업 구분 선택

업종코드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 모두 선택

②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채용계획 기재

-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기간제 채용 시,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 채용자 정보

-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해당 채용자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명	이길동	채용일	20221001	항목삭제
+ 항목추가				

▶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홍길동
전화번호*	010 - 1234 - 1234	팩스번호	선택 - -
이메일*	test @ naver.com	기타(직접입력) v	

① 채용자 정보 기재

지원대상 청년을 신청일 이전 채용한 경우 필수 기재
※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해야 지원 가능

② 담당자 정보 기재

기업 내 도약장려금 실무 담당자 정보 기재
모든 사업 안내는 해당 연락처로 발송됨

▶ 첨부서류 등록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마스킹처리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등을 첨부 ※ 파일은 최대 5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용량 : 10MB 이하) ※ 등록 가능한 형식은 gif, jpg, jpeg, bmp, png, ppt, pptx, dcc, docx, hwp, xls, xlsx, pdf, txt, zip, egg 파일입니다.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찾기"/> <input type="button" value="선택파일삭제"/>
------	--	---

※ 첨부서류 안내 (메일로 제출 가능 : h2568828@daum.net)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사업장 및 관련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모두 첨부

② **참여신청 제출서류** : 안내메일의 첨부파일 확인 ([서식3]개인정보동의서(사업주용), [서식4]중소기업 시스템 활용 동의서)

③ **매출액 증빙** : 2022년, 2023년 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첨부

④ **(5인 미만 기업)**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5인 미만 청년창업기업)**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일 시) 법인 등기부등본

⑥ **(5인 미만 미래유망기업)** 중앙부처 혁신사업에 선정 후 유효한 인증 서류

① 기업 참여 제한 사유 확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의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 단, 성장유망업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 "아니오"에 체크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금융업 및 근로자파견업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영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영단이 공표된 사업장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⑧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지원대상 청년 고용이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청년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청년 채용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고용 이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의 기업으로 정한 기업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② 청년 참여 제한 사유 확인

지원제의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근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특례"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에 해당하는 자는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의 대상이라고 정한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의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예: 청년디지탈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였으나,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금(장려금, 보조금 등 명칭 불문)의 반환을 명령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동 사업의 참여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 사업주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 선택)

전화번호* - -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시저장
참여신청
목록

① 사업주 개인정보 동의 내용 확인

② 사업주 개인정보 기재

**장기고용 인센티브 신청 등 사업 안내 발송되므로
업무 담당직원이 아닌 사업주 정보를 정확히 입력**

③ 참여신청

임시저장 시 운영기관에서 조회 불가능

사업 참여 관련 문의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춘천)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사업팀: 033-256-8828 (내선2번)
도약장려금 담당자: 070-4314-4613
이메일 : h2568828@daum.net



Social Cooperative Hope Re-born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